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증거보전 절차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등 정비 〉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538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입법배경	2
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정비	3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조치 마련	7
4. 영상물 녹화 절차 보완	9
5. 「성폭력처벌법」 준용규정 정비 등	12
6. 부칙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배경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¹⁾ 제30조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헌재 2021.12.23. 2018헌바524)²⁾.

1) 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2)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진술증거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영상물로 그 증거방법을 한정하고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신문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의 특성 및 형성과정을 고려할 때 이로써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 진술증거에 관하여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그로 인한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등의 반대신문은 금지되며, 재판장은 구체적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중대성과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대안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조치,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개정(2023.7.11.)되어 2023.10.12.부터 시행 중임.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정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을 증

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을 피의자 등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삭제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⑦ (생략) <신설>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⑤ (생략) <삭제>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6조의2(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현행	개정안
	<u>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u>2.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촬영된 진술 및 영상물 촬영이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u> <u>가. 사망</u> <u>나. 외국 거주</u> <u>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u> <u>라. 소재불명</u> <u>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u> <u>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u>

현행	개정안
	<u>아동·청소년의 진술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개정안은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고인 등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물리적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나오더라도 진술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³⁾와 동일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여성가족부는 위헌결정을 받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권도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조치 마련

개정안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술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 ② (생략)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아동·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9조제3항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익 최우선 고려 원칙을 선언하고, 수사 기관과 법원에게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 및 배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제25조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여 수용하는 입장임.

4. 영상물 녹화 절차 보완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조사과정이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다는 사실과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물 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⁵⁾을 준용하도록 함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1.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안 제26조제2항 및 제9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생략) <u><신설></u>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u> <u>1. 조사 과정이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다는 사실</u> <u>2.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u> <u>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u> <u><삭제></u> <u>⑦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u>⑨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u>
<u>② ~ ④ (생략)</u> <u>⑥ (생략)</u> <u>⑤ (생략)</u> <u>⑦ (생략)</u> <u><신설></u>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6)와 동일하게 「청소년성보호

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및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 및 배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여성가족부는 영상물 촬영 시 피해 아동·청소년을 배려하기 위해 미리 설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5. 「성폭력처벌법」 준용규정 정비 등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 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제5항).

또한,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요건을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 ② (생략) ③ (생략) <u><신설></u>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u>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u> <u>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u> <u>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u>
<u><신설></u>	

현행	개정안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별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먼저, 개정안 제25조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25조제3항7)은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 관련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36조부터 제39조8)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1.>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처벌법」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를 13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 7.11. 개정, 2023.10.12.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도 「성폭력처벌법」의 진술조력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피해 아동·청소년)로 확대하고 준용내용도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다음, 개정안 제25조제5항은 「성폭력처벌법」에서 19세미만피해자 등9)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공판준비절차 및 증인신문 방식의 특례를 두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9)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말함(「성폭력처벌법」 제26조제4항 참조).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¹⁰⁾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음, 개정안 제27조제2항은 증거보전의 특례를 「성폭력처벌법」 제41조¹¹⁾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출한 신문사항은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는 열람·복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19세미만피해자등은 제1항의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및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중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0. 20., 2023. 7. 1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대상을 성폭력처벌법과 같이 (19세 미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선정 등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배려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개정안 제27조제2항에 대해서도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의 의무화 정도를 강화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6.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과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수사 중에 이미 영상녹화가 촬영된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영상녹화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이 법 시

행 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644